

● 제333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
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관리 및 운영
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
(의안번호 3340)
검 토 보 고 서

2025. 11. 24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서울특별시장 제출】

의안번호 3340

I. 동의안 개요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나. 제 출 일 : 2025. 10. 18.
다. 회 부 일 : 2025. 10. 23.

2. 제안이유

- 가. 「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」은 마포구 권역의 초등아동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, 많은 아동들에게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형 키움센터와 함께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통해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결합한 사회복지시설임
- 나. 거점형 키움센터는 초등아동의 자유로운 놀이와 쉼의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, 지역 내 아이돌봄 기관·자원을 수평적으로 연계하는 지역 초등돌봄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, 여기에 키즈카페를 결합하여 아동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시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

다. 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, 안전한 놀이와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,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관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
시립 노고산점
- 위치 : 마포구 노고산동 107-38 일대
- 규모 : 지상 3층, 전용면적 999.82㎡(층 면적 1,418.02㎡)
 - [키움센터] 656.72㎡(199평) / [키즈카페] 343.1㎡(104평)
- 조성방법 : 기부채납시설 활용
- 이용아동 및 종사자 정원
 - [키움센터] 아동 110명 / 종사자 12명
 - [키즈카페] 아동 34명(회차별 인원) / 종사자 4명

나. 위탁내용

- 위탁사무 :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
시립 노고산점 관리·운영
 - 조직·인사관리, 예산집행 및 회계·계약, 물품 및 재산관리, 시설물 유지관리
 - 초등돌봄 서비스 기획 및 문화·예술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
 - 초등돌봄 자원의 유기적 연계·조정 및 지역특화 돌봄서비스 제공

-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
- 양육자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 등
- 위탁기간 : 5년(2026. 4. ~ 2031. 3.)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 - '25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('25.9.24.)
- '26년 소요예산(안) : 1,643백만원
 - [키움센터] 1,231백만원 / [키즈카페] 412백만원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아동복지법 제44조의2(다함께 돌봄센터)
 - 아동복지법 제53조(아동전용시설의 설치)
 -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
 -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(지원사업) 및 제7조의 2
(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)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 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
(관리·운영 위탁)
- 민간위탁의 필요성
 -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대규모의 시립 사회복지시설로 초·중·고등학생 대상 문화·놀이·예술 체험 프로그램 기획·운영, 돌봄

서비스 제공 등 거점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

- 또한, 지역사회와 수평적 연계를 통해 아이돌봄 협력망을 구축하고, 다양한 인적·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연계·매칭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자원 활용이 필요함
- 서울형 키즈카페도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돌봄서비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아동의 놀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,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서비스의 양적,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[아동복지법 제44조의2(다함께 돌봄센터)]

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[아동복지법 제53조(아동전용시설의 설치)]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]

-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[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(지원사업)]

-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,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

[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의 2(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)]

-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
[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]

- 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[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관리·운영 위탁)]

-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을 선정하며, 위탁기간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본예산 편성 요구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임영미)

1 동의안의 개요

- ‘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’은 ‘마포구 노고산동 107-38 일대’의 기부채납시설¹⁾을 활용하여 2026년 8월 개소 및 운영 예정²⁾임.
- 해당 시설은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³⁾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‘키움센터’와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7호⁴⁾에 근거하여 아동의 놀이, 오락 및 편의를 제공하는 아동전용시설인 ‘키즈카페’가 결합된 사회복지시설임⁵⁾.

1) 아이돌봄담당관-11115(2025.9.18.),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+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민간위탁 추진계획, p.2.

지상 3층, 전용면적 1,305㎡(총 면적 1,534㎡)

- (키움센터) 962㎡(291평) / (키즈카페) 343㎡(104평)

2) 아이돌봄담당관-11115(2025.9.18.), p.2.

3)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“방과 후 돌봄서비스”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4)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7. 아동전용시설: 어린이공원, 어린이놀이터, 아동회관, 체육·연극·영화·과학실험전시 시설, 아동휴게숙박시설,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·오락,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5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회복지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·선도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 무료 숙박, 지역사회복지, 의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 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
나. 「아동복지법」

4. “아동복지시설”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.

- 본 동의안은 시장이 ‘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’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신규위탁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.
-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‘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’에 관한 구체적 사무는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돌봄 공백 해소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놀이공간 운영과 예산집행 및 회계·계약, 시설물유지와 재산관리 등임.
- 2025.10.기준 총 7개소의 거점형 키움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, 2026년 8월 19일 종료 예정인 제3호(종로) 거점형 키움센터의 기능이 동 위탁시설로 통합될 예정으로 기존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나 아동 돌봄 기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해 보임.

시 설	노원(1호)	동작(2호)	종로(3호)	구로(4호)	성북(5호)	양천(7호)	강서(6호)
개 소	'20.10.12.	'21.1.4.	'21.10.27.	'23.3.30.	'22.9.13.	'23.11.30.	'25.7.7.
위 치	노원구 동일로 231다길 10	동작구 노량진로 10	종로구 사직로 8	구로구 서해안로 2329	성북구 회기로3길 17	양천구 안양천로 1131	강서구 화곡동 1027-29
규 모	연면적 1,683.81㎡ (지하1층 ~ 지상5층)	연면적 747.19㎡ (지상1층 ~ 지상2층)	연면적 1,480㎡ (지상2층 ~ 지상6층)	연면적 999.15㎡ (지하1층 ~ 지상8층)	연면적 1,170.09㎡ (지상2층 ~ 지상5층)	연면적 1,646㎡ (지상2층)	연면적 684.39㎡ (지상2층)
위탁체 (위 탁 기 간)	서울시여성 가족재단 ('20.6.30. ~ '25.5.31.)	서울시여성 가족재단 ('20.7.1. ~ '25.6.30.)	(사)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('21.8.20. ~ '26.8.19.)	(사)따뜻한마음 ('22.11.28. ~ '27.11.27.)	(사)동행연우회 ('22.6.10. ~ '27.6.9.)	국민대 산학협력단 ('23.9.19. ~ '28.9.18.)	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('24.11.20. ~ '29.11.19.)

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6)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‘키움센터 운영’과 관련하여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제1항7) 및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8)에서 시장이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,
-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‘키즈카페 운영’과 관련하여 「아동복지법」 제53조9) 및 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」 제7조제1항10)에 따라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6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7)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“방과 후 돌봄서비스”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8)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9) 「아동복지법」 제53조(아동전용시설의 설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0) 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」 제7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

- 또한,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3항11) 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」 제7조제2항12)에서 시장은 돌봄시설 운영 및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,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점형 키움센터 및 키즈카페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의 근거를 갖춘 것으로 사료됨.

3 종합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4항에 따라 ‘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’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규로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임.
- 문화·예술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과 일반·융합형 센터를 포함한 돌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하고,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비롯하여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놀이 및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있어,
-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에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

11)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
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 12) 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」 제7조(지원사업)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,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- 따라서 향후 집행부서는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아동 돌봄분야에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거점기관으로서 조정 및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고, 2026년 8월 19일 종료 예정인 제3호(종로) 거점형 키움센터¹³⁾의 기능이 본 시설로 통합 되는 점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.

전문위원	김소은	02-2180-8144
입법조사관	이지현	02-2180-8146

13) 아이돌봄담당관-11115(2025. 9. 18.)